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공 배 완*

〈목 차〉

- I. 서 론
- II. 민간경비의 성장
- III.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V. 결 론

〈요 약〉

민간경비의 사회적 성장요인 일차적으로 인간의 안전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범죄의 증가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권력만으로 사회통제나 질서유지가 대체로 원만할 수 있었으나,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장 메카니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적(私的)영역이 확대되어 사적부문이 사회를 리드하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욕구도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문제는 과거의 국가 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민간 의존적 안전구축으로 구도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안전활동이 이미 보편화 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대학 전문교육기관에서도 관련학과의 증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분야가 생활안전 지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겸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전문인력 수준의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민간경비, 경호, 안전요원, 경호교육, 경호제도】

* 경남대 경호비서학부 교수, 정치학 박사

I. 서 론

복잡·다양한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발달은 양적으로 팽창된 사회적 조직들을 삶의 질적 향상에 발전과제를 두고 각각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중사회는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형성되고 복합적인 사회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구도의 사회에서는 '부유한 생활'보다는 '안전한 사회'가 시민들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또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선진사회는 갈등과 마찰, 대립과 반목의 내부적 문제의 파행성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잠재성을 안고 있다. 경제적인 층족이 어느 정도 만족되면서 이제는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의식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먹고사는 걱정보다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문제가 더욱 더 큰 사회적인 관심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국가기관에 의존되어 왔었고, 국가기관이 국가의 안보나 시민의 안전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국가조직에 의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4차원적으로 발생되는 각종의 다양한 사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인 사회관리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도 시민생활의 안전문제가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민간경비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대학의 전문교육기관에서도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분야가 생활안전 지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겸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전문인력 수준의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능력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전문자격인증제도"가 어느 사회에서나 실시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는 '신뢰'로서 작용한다. 특히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직종일수록 이러한 전문자격인증제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다루는 법률분야, 그리고 상시적인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분야, 소방분야 등 사회의

모든 전문분야에서는 이러한 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전문적인 자격과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 ‘민간자격제도’ 이면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인증’ 등 3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치안 또는 사회안전과 관련한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인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호 및 경비 또는 보안관련 자격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직업 또는 직무의 전문화를 위하고 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차원의 자격제도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생활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경호 및 경비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이러한 공식적인 자격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이고, 또는 공인되지 않은 사설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제도의 신설과 더불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의 조정과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전문 관리감독기관의 신설 등도 민간경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본 연구는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민간경호경비분야에 있어서 자격증 제도와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의 개선, 관리감독기관의 보완 또는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하고, 이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서 민간경비의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성을 두고 있다. 민간경비업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제도적인 정비가 요망되는 시점이고, 이는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물론 민간경비원의 자질향상과 내실 있는 대민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계당국의 정책적인 의지가 없는 한 학문적 연구만으로는 제도의 수정이나 보완 및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는 역량적인 한계가 주어지고 있다.

II. 민간경비의 성장

1. 민간경비산업의 성장

우리나라의 민간경비²⁾ 산업이 제도적인 성장기틀을 갖춘 것은 1976년 용역경비업 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법적 민간인 신분인 청원경 찰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의 제도적 시초로서 볼 수도 있으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해서 현재의 경비업과는 내용적인 차이가 있다. 그 후 1978년에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면서 민간경비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한국경비협회의 주요업무(경비업법 제22조)는 경비업무를 연구하고,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후생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과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경비진단이나 그 밖의 경비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도적으로 미흡하지만 이러한 민간경비업에 대한 발전기틀이 마련되면서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의 기계경비시스템이 한국과의 합작형태로 도입되면서 방범적 기능의 민간경비업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 후 각종의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는 양적인 팽창을 이루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전엑스포(1993), 방범전시회 개최(1994), 경비지도사제도의 실시(1997), 대폭적인 경비업법의 개정 및 보완(1999) 등으로 민간경비 업체의 양적팽창은 가속화 되었고, 경비요원에 대한 질적인 성장도 도모하였다.

한국경비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경비협회의 창립연도인 1978년에는 10여개의 경비 회원업체가 있었지만, 협회 설립 10년만인 1987년에는 회원업체가 106개사의 10배로 증가하였으며, 1993년에는 약 500여개 회사로 늘어났고 1996년에는 1,000개 이상의 회사로 늘어나 20년 만에 경비업체의 수가 100배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회원사가 1,800여개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2,000여개 이상의 회사로 증가하였다(표-1).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형태는 인력과 기계의 복합적 운용에 의한 종합경비형태를

1)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일반 민간기관과 민간인의 계약관계에 의해 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집단적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질서유지 및 치안활동을 벌이는 공경비와는 경비대상이나 경비작용, 경비서비스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띠고 있으며, 민간경비 업체의 규모도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질적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본다면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비분야도 인력경비형태의 시설경비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의 안전문제가 과거의 공권력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민간기관 의존체계로의 변화과정이라고 본다면 민간경비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민안전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업체의 발전현황을 <표-1>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민간경비업체의 발전현황

(단위: 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시설 및 호송경비	1,865(88.8)	1,915(86.1)	2,024(84.8)	2,084(83.5)	2,166(83.6)
시설경비	1,830(87.1)	1,874(84.3)	1,962(82.2)	2,031(81.4)	2,115(81.6)
신변보호	108(5.1)	154(6.9)	188(7.9)	217(8.7)	245(9.5)
호송경비	35(1.7)	41(1.8)	62(2.6)	53(2.1)	51(2.0)
기계경비	127(6.1)	134(6.0)	150(6.3)	159(6.4)	147(5.7)
특수경비	-	21(0.9)	26(1.1)	36(1.4)	30(1.2)
허가 총 건수	2,100(100.0)	2,224(100.0)	2,388(100.0)	2,496(100.0)	2,588(100.0)
경비업체 수	1,882	1,929	2,051	2,163	2,213

*자료: 한국경비협회, 경찰청 생활안전국

민간경비의 사회적 성장요인 일차적으로 인간의 안전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범죄의 증가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권력만으로 사회통제나 질서유지가 대체로 원만할 수 있었으나,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장 메카니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적(私的)영역이 확대되어 사적부문이 사회를 리드하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욕구도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문제는 과거의 국가 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민간 의존적 안전구축으로 구도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성장과 발전은 사회발전과 비례하여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다원주의적 사회현상이 심화될수록 민간경비는 더욱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설적 명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민간경비의 사회적인 성장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의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범죄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민간경비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측면이다.

Didier Bigo(1992)는 '자유'의 상승은 사회불안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했다. '자유'는 인간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유'는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급격한 사회변혁을 불러 일으켰다. 사회변화를 인간보다는 '물질'이 리드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부작용과 인간적인 요소의 소멸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는 자유주의적 다양성을 한층 가중시키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시민안전의 문제도 유발시켰다.

삶의 질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시민의 일상이 인간의 기초적 욕구인 '안전욕구'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민간기구에 의한 안보의존 형태로 나타나고, 생활수준의 향상은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거 공경비 중심체제로 이루어져 온 집단안보 의식이 이제는 민간기구에 의한 개인안보체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민간경비의 양적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증대

19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경호'나 '경비'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민간기관의 업무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당시 '경호'의 의미는 대통령 경호실이나 경찰 또는 군의 공권력에 의한 안전작용을 말하는 것이었고, '경비'의 일반적 의미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민간경비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소외되고 있었고, 학계의 연구동향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한국 최초로 관련학과가 대학에 설치된 후 2006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무려 60여개의 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 이외의 대학부설기관이나 사설단체 등에서도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회적인 수요폭주로 인한 공급체계의 대처라고 볼 수 있는 사회의 단편적 현상이다.

민간경비에 대한 교육기관³⁾의 양적 증대는 여타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긍정적인

2) 본 고에서 논하는 '교육기관'이란 대학을 비롯하여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이나 일반 사설 교육기관 등 포괄적인

측면으로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학문적 정립의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이고,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면서 사회의 전문직종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다는 점과 민간경비 관련 산업의 부흥을 통한 청년 실업을 해소에도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는 일면도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학문적 영역의 설정이나 풍부한 연구 실적과 성과가 없이 양적 팽창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지적과,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되는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달리 운영함으로서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 편중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민간경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교육과정의 운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대학교육기관이나 대학부설 교육기관 또는 사설단체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수를 계산하면 동일 교과목 명칭은 하나로 간주 하더라도 약 200여개에 이르는 것을 연구자의 조사결과로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교과목의 운영이 민간경비의 포괄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기관의 기능적 특성화로 볼 수 있지만, 전문직업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볼 때는 직무적 미분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2005년 9월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66개소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고지에 따라 대학의 사회교육원과 일반사설기관에서 많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지방경찰청 관할 기준) 경찰청 지정 개 소수와 교육수요 예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념으로 민간경비관련 교육을 담당하며 인력을 배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2005년까지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민간경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6년부터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제도적인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표-2] 지역별 지정 개소수

구 분	개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서 울	경 기	인 천	충 북	충 남	강 원	부 산	대 구	울 산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66개소	31			11			24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6개소	3			1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10개소	5			2			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50개소	23			8			19							
		11	10	2	2	3	3	3	2	1	2	3	4	3	1

[표-3] 교육수요(예상)

구 分	지정후 5년간 수요 인원	교육실시 완료			실시중		교육실시 예상 인원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3,400명	813	808	685	651	680	680	680	680	680	680	680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20,000명	896	1,626	2,735	3,100	3,500	3,750	4,000	4,250	4,500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410,000명	/	66,013	65,429	79,492	80,000	81,000	82,000	83,000	84,000		

*자료: 경찰청 생활안전과

장래의 유망직종 중의 하나로 분류된 민간경비분야가 학문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학생수급의 논리에만 치우친 양적팽창보다는 '사회안전관리'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내실 있는 연구가 요망되며,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학과의 양적 증가가 전문인력의 양성기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교육계의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3. 민간경비 시장의 확대

민간경비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구조적 특성에 따른 범죄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민간

경비 산업의 발달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1980년에 69,600여개에 이르던 경비업체가 1990년에는 107,000개로 4.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0년에 들어와서는 152,300여개로 증가되어 3.6%의 성장률을 보였다(김두현, 2002).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경비인력도 1980년에는 976,000명에서 1990년에는 1,493,000명으로 약 4%가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883,000명으로 2%의 증가율을 보여(김두현, 2002) 민간경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의 경비업체 수는 1,682개에 경비원은 71,333여명이었고, 1980년에는 경비업체 5,248개로 경비원은 232,617명으로 증가되었으며, 1997년에는 경비업체 9,122개에 경비원 392,624명, 2001년에는 경비업체 9,722개 경비원 약 50만 명으로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공배완, 2004).

한국에 있어서도 경비산업 자체의 발전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다소 떨어지지만 경비시장의 확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4년 현재 2500여개 넘는 경비업체에 경비원의 수는 12만 명을 육박하고 있어 경비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생활안전지킴이로서 민간경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규모면에서는 아직 까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경비업체의 81.3%가 직원 수 50명 이하의 영세업체이고, 직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업체는 6개에 불과하고 직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민간경비업체는 단 4개사에 그치고 있다. 또한 경비원들의 근무조건이나 급여, 복지후생 등도 열악하여 아직까지는 이직율이 높은 편이고 사회의 전문직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활동영역과 시장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국내 민간경비의 시장 수요는 현재 3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25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⁴⁾. 특히 첨단기계장치를 이용한 기기경비는 불황을 모르는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1990년 이후 연 평균 30%이상의 지속적인 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인기계 경비의 최근 성장추세는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더욱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범죄의 증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 경비의 효율성 저하, 숙직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경비수단의 필요 등 사회 전반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3)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506/22/govpress/v9396272.html>

III. 민간경비의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교육의 질적 향상제고

경비업법상 현행 민간경비원의 교육은 일반 민간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일반 및 기계), 청원경찰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반 민간경비원의 경우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또는 대학 및 사설단체, 경비회사 등에서 신임교육 28시간을 받고 자체적으로 직무교육 4(/月)시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표-5),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 88시간과 직무교육 6(/月)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다(표-7). 이는 과거에 비해 일반경비원의 경우 13시간,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8시간이 더 늘어난 교육시간이다.

경비지도사는 시험 합격 후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표-8). 경비지도사 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에는 변동이 없지만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다소의 변동이 발생하였다(표-9). 또한 민간인 신분인 청원경찰의 경우 직무 수행상 필요한 76시간의 기본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12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경비원의 직무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달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구 교육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과거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

구 분	과 목	시 간
학과교육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및 협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2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 시설방호	2
	· 불심검문요령	2
	· 소방	2
무술교육	· 기본훈련 및 호신술	2
기 타	· 입교식, 평가, 수료식 등	3
	계	15

[표-5] 현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과 목	시 간
이론교육 (7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 및 관련법(청원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4 3
실무교육 (1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대응요령 ○ 화재대처법 ○ 응급처치법 ○ 분사기 사용법 ○ 예절 및 인권교육 ○ 체포·호신술 ○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법 포함) 	3 2 3 2 2 3 3
기타(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교식·평가·수료식 	3
	계	28

[표-6] 과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

구 分	과 목	시 간
정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교육 	4
학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 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 민간경비론 	4 8 2
실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경비실무 ·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을 포함한다) · 시설경비(야간경비를 포함한다) · 소방 · 정보보호 · 보안업무 · 민방공(화생방을 포함한다) · 총기조작 · 총검술 · 사격 · 예절 	4 4 6 4 2 4 6 2 4 12 2
무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술 및 호신술 	8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교식, 평가, 수료식 등 	4
	계	80

[표-7] 현재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과 목	시 간
이론교육 (15시간)	○ 경비업법 및 관련법(청원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8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및 현행법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	4
	○ 범죄예방론(신고요령 포함)	3
	○ 정신교육	2
	○ 테러 대응요령	4
	○ 폭발물 처리요령	6
	○ 화재대처법	3
	○ 응급처치법	3
	○ 분사기 사용법	3
	○ 출입통제 요령	3
실무교육 (69시간)	○ 예절교육	2
	○ 기계경비 실무	3
	○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 포함)	4
	○ 민방공(화생방 포함)	6
	○ 총기조작	3
	○ 총검술	5
	○ 사격	8
	○ 체포·호신술	5
	○ 관찰·기록법	3
기타(4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88

[표-8] 과거 경비지도사 교육과목과 시간

구 분	과 목		시 간
공통교육 (20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 법학개론 • 경비실기(봉술 및 호신술) • 교육기법 • 입교식, 평가, 수료식 		4 2 2 4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경비 • 호송경비 • 신변보호 • 기계경비개론 • 일반경비 현장실습 		5 5 5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경비 운용관리 •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인력경비개론 • 기계경비 현장실습 		7 7 3 7
			계 44

[표-9] 현재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관련)

구 분	과 목	시 간
공통교육 (28시간)	○ 경비업법	4
	○ 청원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3
	○ 테러 대응요령	3
	○ 화재대처법	2
	○ 응급처치법	3
	○ 분사기 사용법	2
	○ 교육기법	2
	○ 예절 및 인권교육	2
	○ 체포·호신술	3
	○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경비 ○ 호송경비 ○ 신변보호 ○ 특수경비 ○ 기계경비개론 ○ 일반경비현장실습 	2 2 2 2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경비운용관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인력경비개론 ○ 기계경비현장실습 	4 4 3 5
계		44

[표-10] 청원경찰 교육과목 및 시간표

학 과 별	과 목	시 간
정신교육	정신교육	8
학술교육	형사법 청원경찰법	10 5
실무교육	경 무 보 안 경비 정 보 방 위 기본훈련 총기조작 총 검 솔 사 격	경찰관직무집행법 방 범 경범죄 처벌법 시설경비 소 방 대공이론 불심검문 민방공 화생방 5 3 2 6 4 2 2 3 2 5 2 2 6
술 과 기 타	체포술 및 호신술 입교, 수료 및 평가	6 3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대체로 잘 정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과정 이행의 불성실성,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교육내용의 중복성 및 현실성 결여, 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구미비, 교육대상자의 적극성 결여 등 교육의 전반적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교육의 부실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교육의 부실현상은 민간경비원의 자질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경비서비스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과 인식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05년 12월 2일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민간경비원의 교육과정을 현실성 있게 고치고(민간경비 교육기능의 강화), 신임교육 시간도 과거의 15시간에서 28시간으로 확대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경찰청 공고 2005-19). 일반 민간경비원과 특수경비원, 그리고 경비지도사에 대한 신임교육과목을 대폭적으로 확대 개선하여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경비요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경찰청은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⁵⁾.

4)5)경찰청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개편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경비협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를 경비 업자에게 위탁실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동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경찰 청장이 매년 연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관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대폭적인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①민간경비원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②신임교육 이수 후 재교육 문제, ③신임교육의 실효성 문제, ④교육검증 방법, ⑤신임교육 수료 후 자격인증의 문제, ⑥관리·감독기관의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문제, ⑦대학졸업자의 신임교육이수 여부에 대한 문제, ⑧전문강사의 부족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 전문자격제도의 도입

‘자격’이란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제도’는 전문분야에 대해 공식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경우 관련 산업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 교육체계의 마련 등은 발전하였지만 전문인으로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렵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사설단체의 남발·무자격자의 양성·낮은 대우·높은 이직률·비효율적 경비서비스·사회적 인식저조·교육과정의 부실 등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비업법 제 11조 2항에 따라 공안위원회는 경비업무의 적정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지식 및 능력에 관한 검정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정 제도를 두고 있다(공배완, 2004). 경비원검정제도는 경비원 교육에 의한 성과를 측정하고 경비원으로서의 일정한 지식 및 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서 경비원의 노력을 더 한층 재촉하고 그로서 경비업무 실시의 적정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민간자격증 관련 사항은 1997년 자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이외의 법인,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자격증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각종의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약 1,000여종이 넘는 민

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2항). ②일반경비원 중 24시간 전 배치신고 대상 경비원은 신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3항). ③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④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서 경찰관서 시설물 등의 이용 사유를 확대하여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안 제14조제3항). ⑤민간경비 교육과정의 과목 중 태러 대응요령, 응급처치법, 범죄예방론 등을 추가하고 기존 과목의 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시도록 규정함(안 별표 1, 2, 4). ⑥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 정통한 실무자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강사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3).

간자격증이 쏟아지고 있어 민간자격증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2005) 민간자격증 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자격증이라고 밝히지 않을 뿐더러 광고주와 교재가격, 교재인도시기, 취업보장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민간자격증의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 기본법을 다시 보완 및 수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적과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격제도의 운용방법에 있어서는 일부 사설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경비 자격증의 필요성 지적에 대해 ‘경호경비원 직무분석’이라는 연구 자료를 학계와 업체의 공동노력으로 발간하여 단계별 교육과정과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민간경비원 자격증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나 실질적인 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비와 유관한 자격증으로서는 ‘경비지도사’와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이 통용되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서 199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고,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는 체계적인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와 ICU가 공동 주관하여 2002년부터 국가인정 민간자격증 성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보보호 발전을 선도해 온 KISA와 IT 관련 기술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ICU가 미래 정보사회 안전의 최후 보루가 될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SIS)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자격제도로서 현재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또한, ‘취약점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 분석 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정보보호 관련 국내 자격증이다⁶⁾.

5) 정보보호전문가 1, 2급에 대한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

a. 정보보호전문가 1급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정보보호전문가 2급 취득과 전산 관련직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전산 관련직무 3년 이상의 경력자 (※첨부1 참고)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정보보호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

b. 정보보호전문가 2급 : 응시자격 제한 없음

2. 시험과목:

a. 필기: ①시스템 보안, ②네트워크 보안, ③어플리케이션 보안, ④정보보호론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증의 경우도 자격등급과 자격요건, 응시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공신력 있는 학회나 협회의 사설기관에서 실시한다면 추후 국가자격증의 성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산·학·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동의 노력과 추진 기구의 지정을 통한 집중적인 연구와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3.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

현재 경호경비관련 유일한 국가자격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는 매년 일정 이상의 인원을 상대평가로 선발하여 민간경비원을 지도·교육·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경비업체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하여 한 때는 유망자격증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비지도사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어 수정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비지도사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①교육시설미비, ②전문강사 부족, ③재교육 제도의 부재, ④고령화 현상, ⑤범죄의 정보화 및 지능화에 대한 대비미흡, ⑥Total Security에 대한 교육부재, ⑦특수경비원제도에 대한 규정 미흡 등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완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이 많다. 현재 경비지도사의 시험은 1차 필수 2과목과, 2차 선택 2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과목나열에 대한 수평적 비중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목별 차지하는 수직적인 비중은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법학개론'의 경우 헌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 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맞지 않는 너무 많은 잡다한 내용을 요구함으로 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시험과목이 ①경찰학개론, ②수사 I, ③영어, ④형법, ⑤형사소송법 등 5과목으로서 법학개론과 같은 잡다한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차 필기시험에 있어서도 일반경비지도사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경호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업무를 신변보호(Body-Guard)에 너무 국한시킴으로 민간

b. 실기: ①정보 보호 관련 단답형 문제, ②정보 보호 관련 서술형 문제,
③정보 보호 관련 실무형 문제

경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신변보호를 비롯하여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원들은 치안과 방범, 방재, 방화, 호송 및 신변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험과목의 조정이 필요하다. 기계경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실성 있는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경비지도사에 합격한 후에는 44시간의 교육을 이수 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이 중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으로서 이미 경비지도사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시간 때우기 식'의 요식행위로 취급될 뿐이다. 현장실무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발하여 일반 경비원들을 교육·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직무교육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경비지도사는 전문 관리자로서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자격증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및 보완이 검토되어야 하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4. 민간경비의 전문 관리감독기관 신설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하여 허가사항과 업체의 관리·감독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타 경비업의 연구·육성·발전과 경비원의 교육에 관해서는 한국경비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기관의 경우 민간경비업에 관해서는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청원경찰에 관해서는 경비과에서 담당하는 이원적인 업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비업과 관련한 경찰기관(서울지방경찰청)의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을 보면, ①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수립, ②순찰지구대 외근업무의 기획 및 지도·교양, ③방범진단 및 심방에 관한 사항, ④산악구조대 운영지도, ⑤112순찰차 및 방범싸이카 운영에 관한 사항, ⑥산불방지 협조업무, ⑦방범 홍보대책, ⑧방범초소운영 관리, ⑨순찰지구대 점검 및 지도·관리, ⑩경비업에 관한 사항, ⑪한강 범죄예방 및 안

전에 관한 사항 등 무려 11가지의 업무를 5명 내외의 소수인원으로 감당을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민간경비 영역으로 간주되는 업무를 민간경비와 청원경찰로 분리하여 관리·감독 부서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비협회의 경우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 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한국경비협회 설립목적).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고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협회 직권의 강제성이 따르지 않으므로 해서 교육에 대한 부실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실질적인 구심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회원사의 공제사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국경비협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기도 한다.

민간경비에 대한 다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국가기관 내에 관리·감독청을 신설하거나, 또는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감독권을 위임하므로 민간경비에 대한 내실 있고 발전적인 운영이 요망되고 있다. 민간경비업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공적인 성격보다는 영리법인의 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회사의 운영방침이나 영리발생 기준에 따라 공공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경비의 특수적 상황을 국가 지원적 체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기구가 설립되어 민간경비의 포괄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결 론

취업·인사포털 사이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헤드헌터, 인사담당자, 연구원 등 직업 전문가 50명을 상대로 실시한 '2005년 10대 유망직업과 신종직업'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2위였던 정보보안전문가가 임금수준, 고용창출, 직업전문성 등 3가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844점, 3500점 만점 기준)를 받으므로 해서 '정보보안 전문가'가 올해의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임금수준 ▲안전성 ▲고용창출 ▲유연성 ▲직업 가치 ▲근무환경 ▲직업 전문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된 조사였다. 한편 신종직업으로는 사이버경찰이 1위로 선정되었고, 실버시터도 3위를 기

록하였다. 이에 대해,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지식산업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어 IT(정보통신), 건강, 인적자산 관리, 안전서비스 등 각 분야의 직업들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어 새로운 전문직종으로서 부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인력의 양성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자격인증제도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부여 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경비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수요에 적절한 공급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격검증제도를 도입하므로서 업무에 적합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장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자격검증제도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기능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여과기능으로서 작용을 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의 각 전문분야에서는 이러한 전문자격인증제도가 도입·실시되어 긍정적인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민간경비가 도입 된지도 50년 가까운 세월이 훌렸다. 그 동안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인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관련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적 진출로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과거에 비해 다소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간경비 산업을 비롯하여 민간경비 영역의 질적인 성장한계는 제도적 미흡 또는 부재현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시장의 성장 및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의 답보적 사고는 시장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착이 부진해지고 있는 것이다. 장래의 유망직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수요나 사회적인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민간경비가 더욱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또한 시장성에 적합한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연적인 태도로 주기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공배완(2005). “민간경호·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제고”. 『경호경비연구』 제9호.
- (2004). “민간경호·경비의 발전에 대한 자본주의의 사회환경적 해석”. 『경호 경비연구』 제7호.
- (2004). 『민간경비학 개론』. 한울출판사
- 김두현·김정현(2002).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 김순열(2000). “민간경비업체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 학회』 제11호
- 김태환·박옥철(2005). “한국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제9호
- 박동균(2004).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3호
- 박준석·박대우(2004). “한국민간경호경비 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경호경비연구』 제7호.
- 백봉현(2002). 『한국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안창훈(1997).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논문집』 제17집.
- 이상철·김태민(2004). “한국 민간경호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9호
- 이윤근(2001). “민간경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경비협회
- 이창무(2003). “한국과 미국의 민간경비 성장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호
- 조병인(2000).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 전대양(2002).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 Burstein Harvey(1994). Introduction to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 Fenelly Lawrence(1992). Security Applications in Industry and Institutions. Butterworth: Heinemann
- Gion Green(1981).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Heinemann
- Maslow, A.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York: Happer & Row

ABSTRACT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rrange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Gong, Bae-Wan / Kyung-Nam University

Recently the demand for civil bodyguards and security guards shows rapid growth. However the supply and training system have some limitations. Educational and training systems for civil body and security guards are on the basic level and private organizations trained in the professional work force. University level training started recently. To protect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body and security guards have to be trained professionally. For it the role of professional training organizations is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current situation of civil body and security guard training industry and to seek an educational model. For it,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be examined.

- . Do the professional training organizations meet social demand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s?
- . What kind of training has to be provided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s?
- . What are the qualifications of the trainers?
- .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raining courses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 . Is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job placement among the trainee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In summary to meet the social demand common curriculum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 will be drawn from the analyses of diverse training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training courses in contents, training periods, educational value, and social aim.

【Key words : Private Security, Body-Guard, Security Agent, Institutional Security】